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7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이 영업정보에 대한 서류제출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는 한편,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계좌 압류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 : 044-201-4755 / 팩스 : 044-201-5581
- 이메일 : csw7168@korea.kr